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형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961

발의연월일: 2025. 2. 6

발 의 자: 박형수 · 엄태영 · 조정훈

임이자 · 김도읍 · 김대식

서지영 • 권영진 • 김성원

구자근 • 윤영석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을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음.

그런데 조정위원 6명으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 제1교섭단체에서 소위 '위장탈당' 등을 통해 무소속이 된 1명의 무소속위원만 안건조정위원회에 포함시켜도 의결정족수인 '3분의 2 이상 찬성'을 충족하게 되어 안건에 대한 충분한 협의나 조정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는 경우가 있어, 국회 내 다수 세력의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저지하려는 안건조정제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,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정수를 8명으로 상향 조정하여 안건 조정위원회에서 이견 조정을 위해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려 는 것임(안 제57조의2제3항).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7조의2제3항 중 "6명"을 "8명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건조정위원회에 관한 적용례) 제5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・	제57조의2(안건조정위원회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회의	③
위원장(이하 이 조에서 "조정	
위원장"이라 한다) 1명을 포함	
한 6명의 조정위원회의 위원	<u>8명</u>
(이하 이 조에서 "조정위원"이	
라 한다)으로 구성한다.	,
④ ~ ⑩ (생 략)	④ ~ ⑩ (현행과 같음)